

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02.10.16(수)

□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
□ 2002년 10월 2일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

-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·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- 묘지의 증가로 인한 도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·납골시설 이용을 적극 확산·유도하여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동조례안의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면 도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바람직한 장례문화를 유도·확산시키기 위해 시의성 있는 사안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

※ 인천광역시 조례 제정 : 2002. 5. 27

- 그러나 상위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·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준수여부를 살펴보면

- 동 조례안 제3조는 수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, 상위법시행령 제3조는 중·장기계획을 3년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

- 동 조례안 제8조는 보존묘지등의 지정은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, 상위법 제29조에는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심의와 중·장기계획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는 규정의 삼입여부에 대하여는 종합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충청북도장사시설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